

# 연구수당 지침

2012. 6. 1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·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을 말한다.

제3조(지급액)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의 20% 이내에서 계상(이 경우, 인건비는 지급인건비와 미지급 인건비 포함)하고 민간기관 지원과제는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직접비 범위내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비만큼 계상한다.

제4조(집행 및 정산)

- ① 신청 :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하여 연구기여도, 참여율,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- ② 연구책임자는 “연구수당 신청서”<별표1>와 “연구수당 기여도평가서”<별표2>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해당 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지급한다
- ④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과제참여자 존재 시, 연구책임자 단독 수령은 불가하다  
(※ 1인이 50% 이상 수령을 인정하지 않는 지원기관도 있음)
- ⑤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집행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.
- ⑥ 협약 시 계상한 연구수당보다 중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,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에게만 지급 할수 있다.

제5조(지급시기) 과제진행 중반 또는 종료시점에 평가하여 지급한다.

제6조(기여구분)

- ① 연구결과물(예:특허, 기술이전 등)
- ② 연구보고서작성
- ③ 우수실험결과
- ④ 논문발표
- ⑤ 기타 우수한 연구성과로 구분된다.

제7조(기여내역) 6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70자 이상 기술하여야 한다.

제8조 (보칙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연구수당 지급 신청서

## 연구수당 지급 신청서

연구책임자 소속		연구책임자 성명	
지원기관		당해년도 연구기간	
연구과제명			
연구수당예 산	₩ 0	기집 행액	잔 액 ₩ 0

위와 같이 본 연구에 관련된 연구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년  
월 일

연구책임자: (인)

산학협력단장 귀하

### ※주의사항

1. 연구원구분: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자, 연구조원, 외부연구원으로 구분
  2. 생년월일: 주민등록번호상의 앞자리
  3. 과제에 기재된 '연구수당예산액'에 '기여도'를 곱하여 연구수당지급액을 산출하여 개인별 계좌로 지급함  
◆ 과제 참여연구원 전체기여도 합은 100%임에 유의
  4. 기여구분 ① 연구결과물(예: 특허, 기술이전등) ② 연구보고서작성 ③ 우수실험결과 ④ 논문발표 ⑤ 기타우수한연구성과
  5. 첨부: '연구수당기여도평가서' 제출必(별첨양식참조)

(별표 2)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

##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

연구책임자 소속		연구책임자 성명	
지원기관		당해년도 연구기간	
연구과제명			

연구원 구분	성명	생년월일	기여구분	기여도 (%)	기여내역

위와 같이 연구수당 기여도평가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 
월 일

연구책임자: (인)

산학협력단장 귀하

※주의사항

1. 연구원구분: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자, 연구조원, 외부연구원으로 구분

2. 생년월일: 주민등록번호상의 앞자리

3. 기여구분

① 연구결과물(예: 특허, 기술이전등) ② 연구보고서작성 ③ 우수실험결과 ④ 논문발표 ⑤ 기타  
우수한 연구성과

4. 기여내역: 6학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70자 이상 기술할 것